

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국산 두류 생산·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산 두류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품목 : 국산 두류(콩, 팥, 녹두)○ (지원기준 및 단가)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비율 : 국고보조금 50%, 자부담 50%* 선별비 110원/kg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의 50% 지원○ (지원한도) 최소 1.1백만원(20톤) ~ 최대 165백만원(3,000톤)○ (사업기간) 2023.01.01. ~ 12.31. * 최종정산일(농가환원) 기준

2. 지원대상

-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하는 사업대상자
 - * 매치는 공동 선별하는 사업대상자로 하되, 계약재배 물량에 한해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 사업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미달로 지원불가

- 콩을 공동선별하는 **콩종합처리장**은 원료투입·정전기·석발기·입자선별기·제품 포장까지의 **공정이 일체화된 시설에 한정**
 - 농산물 검사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23-12호)에 따른 품위 검사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이 가능하고, 품목별 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한 시설
 - 팥·녹두는 국산 두류 비축 지침에 따른 품위검사 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이 가능한 시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콩 종합처리장이 없어서 위탁 정선하는 생산자단체도 신청 가능(위탁 선별 계약서 첨부)
-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4. 사업신청

- 접수방법 : 기한 내 담당자 메일(mayr@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23.10.6(금)까지
 - 사업예산 잔액(154백만원) 전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의처 : aT 식량육성팀 061-931-0794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 해당 시 제출 - (자체SPC미보유) 연계 SPC와 위탁정선 계약서, 약정서 - 전년도 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수매물량, 정선출하량, 농가별 계약재 배약정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연도 재무제표, 별 재배면적 감축실적 증빙서류	-

5. 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금액 배정 방식

- 공모 접수된 건에 대해 사업예산 잔액(154백만원) 이내에서 선착순 배정
- 선착순 기준은 접수 신청 이메일(mayr@at.or.kr) 도착 순서로 확정
- 지원자격·요건에 부합된 업체 대상 선별시설 현장점검 결과, 적정 업체에 한해 지원 대상 여부 최종확정 및 지원 금액 배정